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등 >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86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제2210686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등(안 제47조의8제2항, 제47조의13 신설 등).	3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86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6. 10.

3. 회 부 일 : 2025.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재 업무는 사안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위원회 소관 사무의 특성상 위원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

는 사항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데, 현행법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비밀의 누설금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연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영업기밀 누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제2항, 제47조의1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등(안 제47조의8제2항, 제47조의13 신설 등).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2차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위원의 비밀누설금지를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시 해촉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7조의8(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략)	제47조의8(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2차에 한하여 연임할-----.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③ ----- ----- -----.
1.·1의2. (생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설>	1의3. 제47조의1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설>	제47조의13(비밀누설 금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

현행	개정안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5. (생략) <u><신설></u> <u>25의2. ~ 25의6.</u> (생략) 26. ~ 28. (생략)	<u>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81조(벌칙) ----- ----- ----- 1. ~ 25. (현행과 같음) <u>25의2. 제47조의1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u> <u>25의3. ~ 25의7.</u> (현행 제25호의2부터 제25호의6까지와 같음) 26. ~ 28.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회 위원 중 2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 남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47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47조의7¹⁾에서는 교환·환불중재²⁾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1)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7(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하자심의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하자심의위원회는 제작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교환·환불 중재신청³⁾ 건에 대한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률, 자동차,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을 10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②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교환·환불중재

나.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나.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갈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라. 제31조제4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마.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바. 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중재부 위원은 각 사건별 3인이 배정됨.

4)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8(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현재 운영 중인 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보면, 자동차 분야 33인, 법률 분야 19인, 소비자 분야 등 8인 등 총 6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위원 60인 중 29인이 1회 연임 중이며, 8인은 2회 연임 중에 있음.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단위 : 명)

계	자동차				법률	소비자	기타 (당연직)
	소계	원동기 분야	샤시분야	차체 및 그밖의 분야			
60	33	15	3	15	19	7	1

자료 : 국토교통부

한편, 하자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업무 특성상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알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 운영

-
- 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자동차 제작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기술·사이버보안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 제47조의10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1의2. 제47조의10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처벌조항은 없음.

그런데 최근 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자동차 교환·환불을 위한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선정된다는 지적과 현행 법률상 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특히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시 국토교통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부 임기 제한, 특정 중재위원의 중복 선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 포함되기도 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비밀의 누설금지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먼저, 개정안은 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필요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입법례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

또한, 개정안은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비밀 누설금지 의무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 시 위원 해촉 사유에 포함하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비밀 누설금지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원 해촉사유에 포함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5)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 신청이 있을 경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평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6)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⑨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조정등의 절차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국토교통부 의견

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위원회 고착화 방지 및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연임 횟수 제한이 필요하고 직무상 비밀누설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촉 및 벌칙규정도 필요하므로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75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0조제2항 및 제7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참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개요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7 및 제47조의8

□ (구성) 100명 이내(자동차전문가 1/2 이상)

< 4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계	자동차				법률	소비자	기타 (당연직)
	소계	원동기분야	샤시분야	차체 및 그밖의 분야			
60	33	15	3	15	19	7	1

□ (임기) 2년, 연임가능

□ 위원회 운영

- 전체위원회(60명, 필요시) : 위원회 규칙 및 교환·환불중재 규정 제개정, 제작 결함 재심의 등
- 제작결함분과위원회(24명, 매월) : 제작 결함의 시정 등 관련 심의
- 소위원회(10명, 필요시) : 재심의 요청 사항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심의
- 중재부(각 사건별 3인) : 교환·환불 중재신청 건에 대한 중재판정

□ 위원회 주요업무

1.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중재규정 제·개정
2.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중지명령, 자기인증 조사, 시정조치 및 명령, 제작결함조사, 안전도평가, 무상수리 관련 사항)
3.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위원의 자격**(자관법 제47조의8 제1항)

분야	자격요건	비고
법률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자동차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자동차 전공자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자동차 업무 실무 경험자 ○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한 자동차 실무 경험자 ○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자동차 분야 10년 이상 종사 ○ 자동차 제작 관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정보통신기술 전공자	위원 1/2 이상
소비자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근무 ○ 소비자기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 출신	